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4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김한규 · 박홍근
허영 · 손명수 · 윤후덕
이연희 · 홍기원 · 이소영
전진숙 · 이강일 · 이수진
박희승 · 김성환 · 윤종균
민병덕 · 허종식 · 서영석
이정현 · 김성희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‘특별배임죄’ 규정을 두고 있음. 현행법의 ‘특별배임죄’는 「형법」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.

그러나 「형법」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,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. 또한, 실무상 ‘손해 발생의 위험’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,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

도 있음.

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,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,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622조 등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2조를 삭제한다.

제623조를 삭제한다.

제62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622條(發起人, 理事 其他의 任 員等의 特別背任罪) ① 會社의 發起人, 業務執行社員, 이사, 집 행임원, 監査委員會 委員,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, 第407條第1 項,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 務代行者, 支配人 其他 會社營 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 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 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 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② 會社의 清算人 또는 第542 條第2項의 職務代行者, 第175條 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.	<삭 제>
第623條(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等의 特別背任罪) 社債權者集 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	<삭 제>

<u>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</u> <u>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</u> <u>取得하게하여 社債權者에게 損</u> <u>害를 加한 때에는 7年 以下の</u> <u>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</u> <u>金에 處한다.</u> <u>第624條(特別背任罪의 未遂) 前2</u> <u>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.</u>	<u><삭 제>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